



## 자주하는 질의 답변



## 제도 일반

**Q1**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를 붙이면 안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아도 되나요?

- ▶ 아닙니다.
-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·지자체로부터 과태료,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**Q2** 안전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- ▶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이 관리하는 모든 품목별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.
-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품목별 안전기준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(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) → 정책 → 제품안전 → 안전기준열람 →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).

**Q3**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가 없어졌다고는 하나,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?

- ▶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 원자재(염료, 방수가공제 등)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 민간 자율 인증 ④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.

**Q4**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“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”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?

- ▶ 가능합니다.
- KC마크는 붙이지 않아야 하나,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“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”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**Q5**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를 붙일 경우 처벌을 받나요?

- ▶ 처벌을 받습니다.
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.
- 다만,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법률에 따라 과태료, 벌칙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## 가죽제품

### Q1 인조가죽은 가죽제품에 포함되는데 인조모피도 가죽제품에 왜 포함되지 않나요?

- ▶ 가죽제품이 아닌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됩니다.
- 인조모피는 폴리에스터, 아크릴 등과 같은 섬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됩니다.

### Q2 실내 바닥에 까는 러그의 재질이 인조피혁(PU) 1장에 친환경UV인쇄 후 특정 형태로 재단한 것인데, 인증대상인가요?

- ▶ 가죽제품으로 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.
- 폴리우레탄계러그는 가죽제품(인조가죽)으로 분류되며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가죽제품에 해당합니다.

### Q3 사무실 슬라이퍼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. 해당되는 안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- ▶ 가죽제품으로 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.
- 가죽제품은 천연가죽(피혁) 및 인조가죽(피혁), 천연모피제품(모피)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%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. 문의하신 제품이 가죽재질일 경우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안전기준준수대상 가죽제품(안전기준 부속서3)에 해당됩니다.

## 합성수지제품

### Q1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신청 시 제품의 모양은 동일하나 색상이 다를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?

- ▶ 색상이 다를 경우,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### Q2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, 재질, 색상은 동일하나 모양이 다양한 제품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?

- ▶ 동일한 재질, 색상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에서 유해물질 안전요구 사항 적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- 겉모양의 경우는 모양이 다른 제품 모두 적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
**Q3** 주 재질이 합성수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슬리퍼는 아무런 안전요건 기준이 없나요?

- ▶ 주 재질의 종류에 따라 안전요건이 달라집니다.
- 주 재질이 섬유 및 섬유의 원료인 경우 안전기준 준수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며 가죽이 제품에 60% 이상인 경우 안전기준준수 가죽제품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**Q4** 유아용, 어린이용 변기시트의 경우 합성수지제품에 해당하나요?

- ▶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기타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.
- 유아용, 어린이용 변기시트의 경우, 해당 제품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**가구**

**Q1** 인테리어 벽선반은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인지?

- ▶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소형 가구(예 : 벽걸이형 소형선반, 행거, 비키니 옷장, 와인/와인잔 수납랙, 발판 등) 및 옥외용 가구,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(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)은 안전기준준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.

**선글라스**

**Q1** 블루투스 이어폰 기능이 탑재된 선글라스를 출시하려고 합니다. 출시를 위해서 필요한 인증이 무엇인가요?

- ▶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선글라스에 해당합니다.
-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에 따라서 성능(자외선 차단 기능 등)과 유해물질 용출량 등이 동법에 따른 안전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품을 출시하여야 합니다.
- 참고로, 블루투스 등 전자적 기능에 대해서는, 전기용품 담당 부서(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) 및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 고령자용 지팡이

- Q1** 구조(치수) 항목에서 고무두께 측정을 하게 되어있는데,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지요?
- ▶ 고무를 몸체에서 분리 후 단면적을 봤을 때, 금속제 걸림쇠가 맞닿는 면에서부터 바닥면(모든 돌기 제외) 부를 측정한 후 결과로 합니다.
- Q2** 고령자용 지팡이 경우 공급자 적합성에서 안전기준 준수로 변경 되었는데, 시험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?
- ▶ 제품시험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.  
-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제도입니다.
- Q3** 고령자용 지팡이 종류중 접이식과 조절식이 모두 해당하는 제품은 시험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?
- ▶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  
- 종류가 다르더라도 접이식과 조절식에 해당하는 구조의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Q4** 고령자용 지팡이로 안전기준 준수 시험을 받기 위한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- ▶ 시각장애이용 지팡이를 제외한 고령자가 일상생활에 있어 도우미 없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모두 대상입니다.

## 침대 매트리스

- Q1** 스프링 매트리스에 폼 또는 라텍스가 상부에 결합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내구성 및 수직하중 시험을 해야 하는지?
- ▶ 내구성, 수직하중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.  
- 주 구성층이 스프링 매트리스이고 보충재의 역할로서 라텍스 또는 폼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내구성, 수직하중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.

## 우산

**Q1** 안전기준의 적용범위에 나와 있는 일회성의 용도 등으로 제조된 비닐우산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,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닐 재질의 우산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제품에 해당이 되는지요?

- ▶ 투명한 비닐(EVA재질)로 제조된 우산의 경우, 일회성 용도의 우산은 아니므로 안전기준 준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
**Q2** 골프용 양산 또는 우산 · 양산 겸용으로 표기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도 자외선 차단율 표시가 필수인지 여부.

- ▶ 골프용 우산 또는 양산 겸용 제품의 정의는 살의 길이가 650m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, 살의 길이가 해당 기준보다 긴 경우에만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함.

## 접촉성 금속 장신구

**Q1** 성인용 손목시계인데 시계줄이 가죽이라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?

- ▶ 접촉성 금속 장신구 및 가죽제품에 모두 해당됩니다.
- 손목시계의 경우 시계몸체의 경우는 피부접촉부위가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고 버클도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접촉되는 금속부분에 대해서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 안전기준준수품목 ‘접촉성 금속 장신구’기준에 만족되어야 합니다. 또한 가죽 시계줄의 경우는 동일한 법에서 ‘가죽제품’에 해당되므로 두 가지의 안전기준에 만족된 제품을 판매하셔야 합니다.

**Q2** 성인용 헤어밴드인데 외부는 천으로 되어 있으며, 내부에 금속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KC 인증 대상이 되나요?

- ▶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헤어밴드 내부에 금속대가 있고 그 외부전체를 섬유로 감싼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금속이 없는 제품으로 판단되며, 이런 제품의 경우는 KC인증대상 제품이 아닙니다.

**Q3** 은으로 만든 장신구도 대상인가요?

- ▶ 은의 함량이 92.5% 이상인 경우에는 접촉성 금속 장신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*Q4** 플라스틱 재질로 된 목걸이도 접촉성 금속 장신구에 포함되나요? 포함되는 경우 어떤 시험항목을 진행하나요?

▶ 플라스틱 재질로 된 목걸이는 금속제품이 아니므로 접촉성 금속 장신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## 가정용섬유제품

**Q1** 합성수지제 신발은 어떤 시험항목이 진행되나요?

▶ pH, 폼알데하이드 시험항목이 적용됩니다.

**Q2** 형광증백제와 관련한 시험항목은 없나요?

▶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의 안전요건에 형광증백제에 대한 요구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
**Q3** 카페트, 러그, 양탄자 제품의 뒷면(backing)재질이 고무제, 라텍스(합성고무, 천연고무)등과 같은 섬유재질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제품에 한글표시사항으로 입력이 되어야 하나요?

▶ 카페트, 러그, 양탄자 제품이 파일직물인 경우 뒷면 재질은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고 파일을 조성하는 섬유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.

**Q4** 섬유제품에 있어서 치수표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 “치수의 범위표시가 가능한 제품 중 규격에 명시되지 않는 범위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를 범위 표기법에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여 표기 할 수 있다.” 치수를 어떻게 표시해야하는 건가요?

▶ 각 섬유제품에 있어서 KS K 0051(성인여성복의 치수)표준에 따라 치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.  
- 표시 방법에는 기본 신체 치수(허리둘레, 엉덩이 둘레 등)에 대한 표시와 제품 치수(제품의 실제 치수)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  
- 다만,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를 표기할 수는 있으나 기본 신체 치수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
**Q5**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내용 중 표기사항을 보니 제조년월을 표시하게 되어있는데요. 저희 제품은 박스에 포장되어있는 침구류의 경우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에 제조년월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으면 최종 포장재인 박스에 제조년월을 ‘별도표기’로 표시하여도 무방한가요?

▶ 가능합니다.  
- 제품의 라벨에 제조년월을 기재하신 경우 포장재인 박스에 제조년월을 중복하여 표기하실 필요는 없으며, ‘별도표기’로 표시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.

**Q6** 모자에 넣을 케어라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. 케어라벨을 전문 영어로 작성해도 괜찮나요?

- ▶ 영문 라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국문/영문 둘 다 표기하시기 바랍니다.
- 문의하신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가정용섬유제품에 해당되어, 가정용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을 따르면 됩니다.

**Q7** 성인용 의류의 KC 인증 기준, 절차, 비용 문의드립니다. 인스타그램 등 '온라인 몰'에서 판매 예정입니다.

- ▶ 문의하신 제품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시험절차 및 비용은 시험 가능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.
- 한국의류시험연구원(KATRI), FITI시험연구원, KOTITI시험연구원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로 문의하시면 안내 가능합니다.